

勞 動 經 濟 論 集
第37卷 第4號, 2014. 12, pp.1~24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과: 2010년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안 태 현**

본 연구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의 수급자 특성을 살펴보고, 실업자 재취업 촉진에 대한 성과 변화를 살펴본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 제도 변경 이후로 여성 및 고령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수혜 집단이 취업 애로계층으로 다소 전환되어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취업촉진이 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책 목표에 보다 근접해졌음을 시사한다. 제도 변경 전 후의 재취업률과 재취업된 일자리 유지율을 비교한 결과, 재취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수급요건 강화로 인한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재취업 일자리 유지율은 제도 변화 이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조기재취업수당, 고용보험, 실업급여

논문 접수일: 2014년 7월 17일, 논문 수정일: 2014년 10월 13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4년 11월 24일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평가센터 연구과제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의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ahn83@sogang.ac.kr)

I. 서론

실업보험 혹은 고용보험은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돕고, 이를 통해 안정된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많은 OECD 국가에서 기본적인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 지급 이외에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일본은 고용보험 도입 초기부터 조기재취업촉진 제도를 가지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고 장기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금전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 재취업자에 한정하여 잔여 구직금액의 1/3을 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의 확대와 수급 수준의 인상을 통해 제도가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 확대에 따라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급증하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2010년 2월 이후로는 수급자격 강화 및 신청 시기의 전환 등 재취업수당제도는 적용 요건이 강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2010년의 제도 변화는 구직급여 소진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한 실업자에게 지급자격을 부여하던 종전 제도에서 잔여 소정 구직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자로 지급자격을 축소하고, 재취업수당 청구를 취업 시점이 아닌 취업 후 6개월 이후로 변경하였다. 또한 재취업수당을 재취업 시점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로 지급하던 종전에서 잔여 지급액의 절반을 지급하여 수급적용 비율을 단순화하였다. 이에 더 나아가 2014년 1월부터는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구직자로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취업 후 12개월 이상 취업이 유지된 경우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1) 미국은 1980년대에 일부 주에서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운영한 바가 있으나,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식 제도로 도입하지는 않았다(Decker 1994; Meyer 1995 1996; Robins & Spiegelman 2001).

를 축소하였다.

최근 재취업수당 제도 축소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급인원 및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제도 변화 이전에는 재취업 수당이 여성 및 고령층 등 잠재적으로 장기실업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재취업 애로집단에 초점이 맞추어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 또한 수급자격자, 혹은 수급자들의 취업성과에 대해 의문점과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바, 과연 제도 변화 이후에는 수급자의 적절성이 높아졌는지, 조기재취업수당의 재취업촉진 효과 및 일자리 유지 효과가 높아졌는지 등과 관련하여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의 수급자 특성 및 이에 따른 재취업촉진 및 재취업 일자리 유지율 등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점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제도의 변천과 논의 배경

고용보험제도 도입과 더불어 취업촉진 수단으로 지급된 조기재취업수당은 2010년 전까지 제도 변경이 거듭되면서 지급대상 및 수급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1년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 재취업자에 한정하여 잔여구직금액의 1/3을 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후 1998년부터는 수급 수준은 잔여구직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0년 4월부터는 1년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 직장에 취직한 조건으로 수급요건을 완화하였다.

특히 2004년부터는 6개월 이상 지속가능한 안정된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특히, 잔여수급일수 요건(소정일수의 절반 이상)을 삭제하여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2006년부터는 재취업 시점에 따라 조기구직급여를 차등지급하여, 소정급여일수를 2/3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잔여구직급여의 2/3, 소정급여일수를 2/3 미만 1/3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잔여구직급여의 1/2, 소정급여일수를 1/3 미만 남긴 경우는 잔여구직급여의 1/3을 지급하였다.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수급요건 완화로 인한 지급액의 증가, 일본 제도에 비한 관

대한 운영으로 인한 실업급여 지출 부담 증가를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2004년의 제도 변화는 조기재취업 자격자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수당 지급의 차등화를 가져온 200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신청자 수가 추가적으로 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급자들이 남성, 30대 이하, 고학력계층 등 재취업 취약계층이 아닌 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프로그램의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조기재취업수당은 혜택자의 구직급여일수를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출에 비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김동헌·박혁 2008).

2004년 조기재취업수당 사업 변화를 연구한 김용성 외(2009)는 수급자 특성 및 수급 변화에 대해서 김동헌·박혁(2008)의 연구 결과를 재확인하는 한편, 구직급여일수 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찾지 못했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순수 실업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2004년, 2006년 대폭적인 수급요건 완화의 효과를 연구한 문헌들은 실업기간 단축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공통적으로 사업비용 대비 효과가 낮아 수급요건을 강화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로는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신청 시기도 재취업 시점 6개월 이후로 연기하는 등 재취업수당 제도는 적용요건이 강화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2010년 2월 변경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에서는 수급자격을 잔여수급일수가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자로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수당 청구 시점을 재취업 시점이 아닌 6개월 이상 계속고용 혹은, 자영업을 영위한 후로 변경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재취업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재취업수당을 2006년 이전처럼 잔여구직금액의 1/2로 단순화하였다. 최근 2014년 1월부터는 잔여수급요건을 더욱 강화(소정일수의 1/2 이상)하고, 재취업하여 6개월 이상 계속고용된 경우에 지급하던 것을 12개월 계속고용된 경우에만 지급하여 지급요건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2010년 제도 변경 이후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한 평가로는 이시균(2012)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수급자격 강화 이후 수급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동시에 재고용 실적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고학력자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종전에 비해 소폭 늘어났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분석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 등으로 인해 수급자

특성 변화 및 재취업 효과, 장기근속 효과에 등에 대한 논의에는 한계가 있다.

Ⅲ.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특성

1. 분석 자료

본고에서는 조기재취업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DB 자료를 사용하였다. 고용보험 DB는 크게 실업보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자료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실업보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기간은 신규 실업급여 신청기준으로 2006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통계 및 지급통계를 사용하여 구직급여 수급자 및 조기재취업 수급자의 인적 특성 및 이직 전 직장 특성을 연결하였다. 수급자의 이질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구직급여 및 재취업수당 자료만을 이용하고, 상병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각종 연장급여 등 기타 수당을 받은 실업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소요기간 및 재취업 일자리 유지율 분석을 위해 추가로 고용보험 취득자 통계 및 상실자 통계를 바탕으로 생성된 직업력 자료를 결합하였다.

2. 기술적 통계 및 수급자 특성의 변화

본 절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 전후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표 1>로부터 <표 6>에 걸쳐 2006-2010년 1월 자료와 2010년 2월 이후를 나누어 수급자의 인적 특성 및 전 일자리 특성 등을 비교하였다.

<표 1>에서는 제도 변화 전후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제도 전후 재취업수당의 여성 비율은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보다 낮고 제도 변화 후 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그 변화는 크지 않다.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학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도 전후 모두에서 재취업수당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높다.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구직급여 및 재취업수당 수급자 그룹 모두 30대 이하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대신 50대 이상의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또한 제도 변화 이후 재취업수당 수급자 중 30대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50대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던 40대의 비중보다 높아진 점은 재취업수당 수급자 중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이는 2010년 제도 변화가 고령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여준 효과일 수 있다.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와 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기초임금일액의 연도별 변화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기초임금일액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기초일액은 모든 연도에 걸쳐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분석 대상 기간 중 조기수당 수급자의 기초임금일액은 2011년에 가장 크고 2013년에 가장 적지만 모든 기간에 걸쳐 구직급여수급자 기초일액의 1.1-1.2배로 비율 변동은 크지 않다.

<표 1> 제도 변화 전후 인적 특성 변화

(단위: %)

	구직급여		재취업수당	
	2006-2010.1	2010.2-2013.7	2006-2010.1	2010.2-2013.7
여성	44.17	46.93	32.12	32.89
학력				
중졸 이하	9.98	8.82	6.31	5.96
고졸	51.11	48.45	48.78	44.96
전문대졸	14.87	15.26	16.85	17.12
대졸	23.08	26.38	26.76	30.4
석박사	0.95	1.09	1.29	1.57
연령				
20대 이하	22.82	17.96	21.38	14.38
30대	28.48	26.19	36.27	33.27
40대	22.6	22.43	23.32	24.48
50대 이상	26.09	33.43	19.03	27.87

〈표 2〉 기초임금일액

(단위: 원)

연도	구직급여(A)	재취업수당(B)	비율(B/A)
2006	60,475	68,717	1.136
2007	60,835	68,900	1.133
2008	62,635	70,257	1.122
2009	64,559	73,696	1.142
2010	64,668	76,571	1.184
2011	68,163	82,373	1.208
2012	69,371	81,680	1.177
2013	71,913	77,475	1.077
2006-2010.1	62,481	70,776	1.133
2010.2-2013.7	68,118	80,058	1.175

피보험기간을 살펴보면, 구직급여 수급의 경우와 비교할 때 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피보험기간이 길다. <표 3>에 따르면 일반 구직급여의 경우 17-21% 정도는 1년 미만의 피보험자이지만 재취업수당은 6-7%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재취업수당 수급자의 60% 이상은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데, 이는 일반 구직급여의 41-46%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제도 전후 변화를 비교해 보면,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 3년 이상 실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1년 미만 비중은 증가한 반면, 재취업수당 수급의 경우 3년 이상 피보험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1년 미만은 소폭 감소하였다. 위와 같은 제도 변화 전후 피보험기간 분포의 변화는 수급자 연령대의 증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피보험기간

(단위 :%)

	구직급여		재취업수당	
	2006-2010.1	2010.2-2013.7	2006-2010.1	2010.2-2013.7
1년 미만	17.24	20.42	7.38	6.10
1년 이상 - 3년 미만	36.76	38.15	29.41	28.13
3년 이상	45.99	41.43	63.21	65.76
관측 수	3,087,587	3,279,542	683,625	329,746

〈표 4〉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재취업수당	
	2006-2010.1	2010.2-2013.7	2006-2010.1	2010.2-2013.7
90일	27.49	29.06	15.94	11.80
120일	21.91	20.44	20.54	17.59
150일	21.32	22.38	21.37	22.35
180일	15.45	13.35	23.67	22.16
210일	9.64	9.43	14.05	18.08
240일	4.18	5.35	4.44	8.02
관측 수	3,087,587	3,279,542	683,625	329,746

소정급여일수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 90일 집단이 제도 변화 전후 모두 27-29%로 가장 많은 반면, 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경우 제도 변화 전은 180일, 변화 후는 150일 집단의 비중이 가장 크다. 또한 재취업수당 수급자 중에서 소정일수 210일, 240일 집단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급자 연령대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제도 변화 전후 분포 변화의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소정급여일수가 구직급여수급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 일자리 특성은 <표 5>와 <표 6>에 나타나 있다. 재취업수당 수급자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 직종의 비율이 높고 단순노무직 비율이 낮다. 제도 전후를 비교해 보면 구직급여 집단 및 재취업수당 집단 모두 단순노무직 비율이 낮고 관리자, 전문가 그리고 장치기계 및 조립원 비율이 높다.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건설업,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으나, 최근 들어 제조업의 비중이 줄었다. 제도 변화 전후 모두 재취업수당 집단의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두 집단의 산업 분포 변화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는다. 실업 전 일자리의 규모를 살펴보면 재취업수당 집단에서 5인 이하 일자리 규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편 10-99인 규모가 높으며, 제도 변화 전후 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지금까지 기술한 실업급여 수급자 특성은 김동헌·박혁(2008, 2012) 등 2010년 제도 변화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비슷하다. 즉,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남성, 고학력, 30대 이하의 젊은 실업자들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2010년 제도 변화 이후로 재취업수당 수급자 중 여성 비율의 소폭 상승

과 고령자층의 증가 등 변화가 다소 관찰되나 단순 집단비교로는 두 집단 간 뚜렷한 변화의 패턴 차이는 보이지는 않는다.

〈표 5〉 직장 특성 비교

	구직급여		재취업수당	
	2006-2010.1	2010.2-2013.7	2006-2010.1	2010.2-2013.7
직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8.67	13.18	10.3	15.51
전문가	12.23	18.64	14.01	20.76
기술공 및 준전문가	15.34	18.32	16.37	17.55
사무직원	15.12	6.83	15.99	7.42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4.4	2.49	3.94	2.21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1.09	1.67	0.61	0.53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11.76	8.18	11.1	7.4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4.96	5.26	6.71	8.13
단순노무직근로자	26.43	25.41	20.96	20.48
관측 수	3,084,823	3,279,135	683,476	329,730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1.19	1.28	0.52	0.45
광업	0.19	0.15	0.20	0.15
제조업	26.40	17.84	31.27	23.8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25	0.22	0.28	0.27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48	0.49	0.42	0.47
건설업	15.11	15.97	11.78	11.13
도매 및 소매업	10.87	9.96	10.66	9.69
운수업	3.86	3.76	4.60	5.55
숙박 및 음식점업	2.48	2.91	1.70	1.8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41	3.64	5.55	5.34
금융 및 보험업	1.89	1.89	1.50	1.67
부동산업 및 임대업	3.78	3.45	5.21	5.8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5	4.72	5.21	6.1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62	9.75	8.59	10.7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37	6.67	0.99	2.00
교육서비스업	3.27	4.96	1.93	2.7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01	8.82	6.51	8.8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86	1.03	0.59	0.6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45	2.45	2.46	2.53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 않은자	0.04	0.02	0.02	0.01
국제 및 외국기관	0.00	0.02	0.00	0.01
관측 수	3,086,315	3,279,540	683,316	329,746
기타산업				
분류불능				

〈표 6〉 규모

	구직급여		재취업수당	
	2006-2010.1	2010.2-2013.7	2006-2010.1	2010.2-2013.7
5인 미만	21.20	22.86	18.09	17.97
5 - 9인	13.14	13.56	13.78	14.11
10-99인	38.13	36.54	41.87	39.67
100-499인	17.49	15.61	16.98	16.81
500인 이상	10.03	11.43	9.28	11.43
관측 수	3,087,587	3,279,541	683,625	329,746

IV. 조기재취업수당 수급확률 분석

본장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여러 다른 특성들을 통제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대상은 구직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의 재취업수당 수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하였다. 재취업수당 수급 모형은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제도 변화 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특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수급자 특성변수와 제도 변화 후 시점을 의미하는 더미변수와 교차항을 포함하였다.²⁾ <표 7>에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시간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추가하였다.

수급자 특성 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를 살펴보면 제도 변화 후에 재취업수당 수급자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취업수당 수급과 관련된 성 및 연령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30대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확률이 높고, 50대 이상의 수급확률이 가장 낮다. 이러한 패턴은 2010년 이후에도 전반

2) 재취업수당 수급 모형은 종속변수가 수급, 미수급인 이항선택모형이므로 프로빗(혹은 로짓모형) 추정이 이상적이나, 교차항을 포함한 계수의 해석 편의를 위해 선형확률모형을 사용하였다. 프로빗이나 로짓 모형의 단점은 계수 추정에 해석이 쉽지 않다는 것이며, 이종차분을 통한 설명변수 효과의 방향 또한 교차항의 계수로 판단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선형확률모형이 실제 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해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Ai and Norton (2003) 및 Wooldridge(2001)를 참조하기 바란다.

적으로 발견되지만, 여성 수급확률이 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40-50대의 수급확률이 상승하였다. 다른 특성들을 통제할 때, 40대의 수급확률은 2010년 이후에는 20대의 수급확률과 차이가 거의 없다.

학력 변수를 살펴보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재취업수당취득 확률이 높고,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수급확률이 가장 낮다. 특히 석박사 학위 소지 실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확률이 가장 높다. 그러나 학력별 수당 수급확률의 차이는 2010년 제도 변화 이후 소폭이나마 감소되었다. 특히, 중졸 이하의 저학력 실업자의 재취업수당 수급확률이 제도 전에 비해 1.5%포인트 가량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표 7> 수급자 특성 재취업수당 선택 모형

변수	Coefficients	Std Error	2010년 이후 터미변수와 교차항	
			Coefficients	Std Error
2010년 이후(제도 변화 후)	-0.0956***	(0.0017)		
여성	-0.1052***	(0.0005)	0.0424***	(0.0007)
30대	0.0040***	(0.0009)	0.0006	(0.0012)
40대	-0.0225***	(0.0010)	0.0234***	(0.0013)
50대 이상	-0.1030***	(0.0011)	0.0580***	(0.0015)
중졸 이하	-0.0289***	(0.0008)	0.0147***	(0.0011)
전문대졸	0.0255***	(0.0008)	-0.0066***	(0.0010)
대졸	0.0251***	(0.0007)	-0.0048***	(0.0009)
석박사	0.0481***	(0.0026)	-0.0064*	(0.0035)
기초임금일액(만 원)	0.0001***	(0.0000)	-0.0000	(0.0000)
소정급여일				
120	0.0251***	(0.0011)	-0.0029*	(0.0015)
150	0.0629***	(0.0014)	-0.0047***	(0.0018)
180	0.1140***	(0.0019)	-0.0128***	(0.0025)
210	0.1228***	(0.0020)	0.0121***	(0.0027)
240	0.0843***	(0.0023)	0.0239***	(0.0030)
피보험 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0.0350***	(0.0011)	-0.0240***	(0.0014)
3년 이상	0.0863***	(0.0017)	-0.0484***	(0.0022)
규모				
5 - 9인	0.0227***	(0.0008)	-0.0068***	(0.0011)
10- 99인	0.0397***	(0.0006)	-0.0119***	(0.0008)
100- 499인	0.0269***	(0.0008)	0.0005	(0.0011)
500인 이상	0.0029***	(0.0010)	0.0056***	(0.0012)

변수			2010년 이후 교차항	
	Coefficients	Std Error	Coefficients	Std Error
직종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0.0298***	(0.0010)	-0.0083***	(0.0012)
전문가	0.0450***	(0.0010)	-0.0138***	(0.001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0267***	(0.0008)	-0.0138***	(0.0011)
사무직원	-0.0082***	(0.0009)	-0.0078***	(0.0013)
서비스근로자 및 상품화 시장판매근로자	-0.0205***	(0.0012)	0.0030	(0.0019)
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자	0.0139***	(0.0020)	-0.0225***	(0.0023)
기능원 및 관련근로자	-0.0123***	(0.0009)	0.0043***	(0.0012)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0.0433***	(0.0012)	-0.0059***	(0.0017)
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0.0642***	(0.0018)	0.0202***	(0.0023)
광업	-0.0298***	(0.0053)	-0.0101	(0.007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33	(0.0047)	-0.0140**	(0.006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483***	(0.0032)	0.0129***	(0.0042)
건설업	-0.0253***	(0.0008)	-0.0100***	(0.0012)
도매 및 소매업	-0.0240***	(0.0009)	0.0050***	(0.0012)
운수업	0.0018	(0.0013)	0.0081***	(0.0019)
숙박 및 음식점업	-0.0231***	(0.0014)	0.0094***	(0.00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34***	(0.0013)	0.0003	(0.0018)
금융 및 보험업	-0.0594***	(0.0017)	0.0170***	(0.00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652***	(0.0014)	-0.0086***	(0.002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0.0053***	(0.0013)	-0.0009	(0.001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354***	(0.0010)	-0.0118***	(0.001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757***	(0.0010)	0.0349***	(0.0013)
교육서비스업	-0.0794***	(0.0012)	0.0335***	(0.0016)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0.0257***	(0.0012)	-0.0208***	(0.00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0.0545***	(0.0022)	0.0149***	(0.002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0.0093***	(0.0015)	-0.0019	(0.0021)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	-0.0323***	(0.0082)	-0.0226*	(0.0123)
국제 및 외국기관	-0.0851***	(0.0271)	0.0314	(0.0310)
상수항	0.1477***	(0.0013)		
관측 수	5,412,801			
R-squared	0.0818			

주: 월, 연도 더미 포함.

*** p<0.01, ** p<0.05, * p<0.1

다음으로 실업급여 및 기간 산정에 기반이 되는 변수들을 살펴본다. 구직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기초임금일액을 살펴보면, 기초일액이 높을수록 재취업확률이 소폭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초일액 만 원 증가는 재취업수당 수급확률을 0.01%포인트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그 영향은 크지 않고, 제도 변화의 효과도 크게 보이지 않는다.

소정급여일 분포를 살펴보면, 소정급여일이 긴 구직 급여자의 재취업수당 확률이 높다. 연령 및 피보험일수 등 관련 변수들을 통제하였을 때, 2010년 이전에는 소정일수 210일 구직급여자의 재취업수당 수급확률이 가장 높다. 제도 변화 후에도 그 양상은 유지되지만, 180일 집단의 확률이 줄고 소정급여일수 최장 집단인 240일 구직급여자의 수급확률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재취업수당 수급이 증가한 맥락과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보험기간 변수를 살펴보면,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재취업수당 수급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피보험기간은 직장경력과 관련이 많으므로 경력이 높은 구직급여자의 재취업수당 취득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변화 이후 피보험기간의 재취업수당 수급확률 증가 효과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 전 일자리에 관한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전 직장 종업원 규모가 10인 이상, 500 미만인 구직급여자의 재취업수급 확률이 가장 높으며 5인 미만이나 500인 이상의 재취업 수급확률이 가장 낮다. 제도 변화 후 10-99인 규모 그룹의 수급확률이 하락하지만 그 외에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직종변수(단순노무직 기준)를 살펴보면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공의 재취업수당 수급확률이 높고, 서비스 및 판매직의 수급확률이 낮다. 2010년 제도 변화 이후 농업업 숙련 근로자의 수급확률이 감소하였고, 전문가 및 기술공의 수급확률이 소폭 감소하였다. 산업변수를 살펴보면, 제조업에 비해 행정 및 교육 서비스업의 수급확률이 가장 작지만 2010년 이후로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 및 30대 이하의 고학력 계층의 조기 재취업 수급확률이 높지만 2010년 이후로 여성 및 고령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V. 제도 변화 전후 재취업성과 변화

1. 조기재취업수당 2010년 제도 변화 논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은 2010년에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신청 시기를 재취업시점 6개월 이후로 연기하는 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제도 변화의 주된 내용은 구직급여 소진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한 모든 구직자에게 지급자격을 부여하던 종전 제도에서 잔여 소정 구직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자로 지급자격을 축소하고, 재취업수당 청구를 취업시점이 아닌 취업 후 6개월 이후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재취업수당을 재취업시점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로 지급하던 종전에서 잔여 구직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여 수급적용 비율을 단순화하였다.

우선적으로, 수당 변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제도 변화 후 청구시점 변화로 인한 조기 재취업수당의 인센티브 효과는 모든 그룹에서 감소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도 변화 후 수당 변화는 <표 8>에 정리되어 있는데, 수급일수 90일 집단은 모든 잔여기간 구간에서 재취업수당이 감소하거나 동일하고, 120일 이상 집단은 일부 구간(잔여기간 1/3 미만 30일 이상 구간)에서 재취업수당의 증가가 있다. 따라서 청구시점 변화로 인한 효과를 제외하고 재취업수당 수준 측면만을 살펴볼 때는 제도 변화로 인해 전체적으로 재취업기간의 증가 효과가 기대되나, 잔여기간 구간별로 가능한 수당금액이 증가하는 구간이 있어서 부분 구간에서는 재취업으로의 탈출확률이 전보다 상승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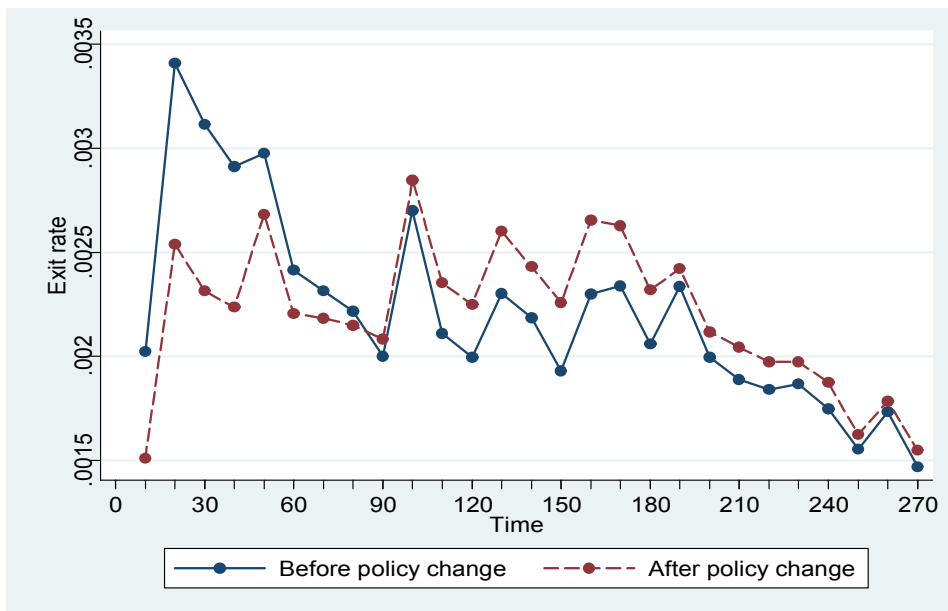
<표 8> 잔여수급일수에 따른 재취업 수당금액의 제도 변경 전후 비교

소정일수	잔여 기간 2/3 이상	잔여기간 1/3-2/3	잔여기간 1/3 미만	30일 미만
90일	감소	동일	미지급(감소)	미지급(감소)
120일 이상	감소	동일	증가	미지급(감소)

2. 제도 변화 전후 재취업률 변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기재취업수당은 2010년에 수급자격을 강화하고 신청 시기를 재취업시점 6개월 이후로 연기하는 제도 변경이 이루어졌다. 본 절에서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에 따라 재취업성고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우선 재취업률(reemployment hazard rate) 혹은 실업 탈출률을 살펴본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재취업률은 제도 전후 뚜렷한 패턴 변화를 보인다. 제도 변화 전에는 수급 초기인 20-30일경에 재취업률이 가장 높으나 제도 변화 후에는 수급 100일 전후가 가장 높다. 또한 제도 변화 후 90일 전까지는 재취업률이 제도 변화 전에 비해 낮아 수급 초기 재취업으로의 진입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90일 이후로는 패턴이 바뀌어 제도 변화 후의 재취업률이 소폭 높아진다. 또한 수급 120일 이후 기간을 살펴보면, 제도 변화 전에는 20일 이후 재취업률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수급 180일 이후에 감소 추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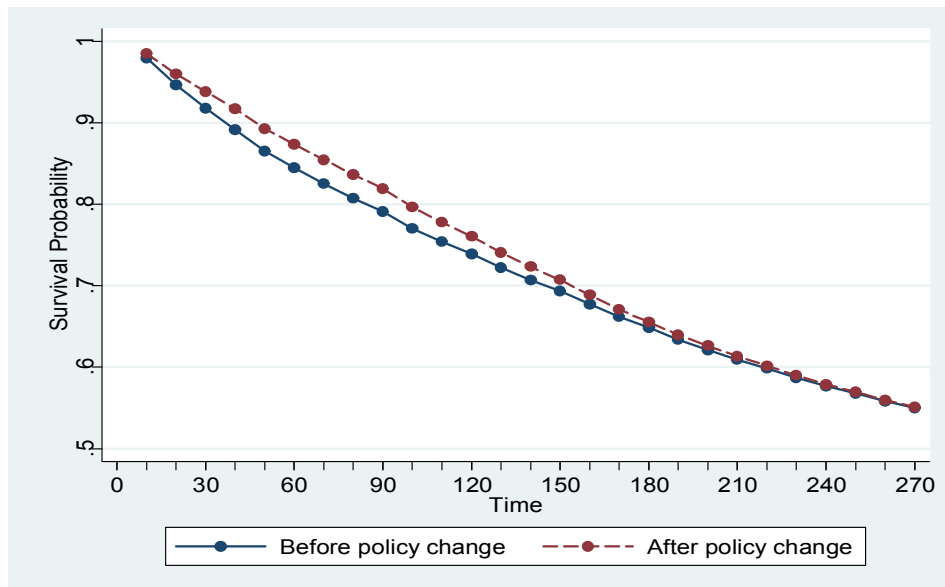
[그림 1] 제도 변화 전후 재취업률 (reemployment hazard rate)



실업 유지율(unemployment survival rate)을 살펴보면, 앞서 확인한 재취업률 변화의 결과를 잘 보여준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듯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경 후 실업 유지율은 구직급여 수급 초기에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제도 변경 전 후 실업 유지율의 차이는 90일경에 가장 크며 그 후로 점차 줄어들어 210일 이후에는 제도 전후 실업 유지율의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모수적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2010년의 제도변화 후 초기에는 재취업률의 감소로 단기 실업 유지율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고, 대신 중장기적으로 재취업률이 증가해 중장기적 실업 유지율의 변화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재취업률 및 실업 유지율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특성 및 전일자리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반적인 패턴을 보기 위해 비모수적으로 측정한 것이다. 또한 소정급여일수별로 재취업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인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콕스 비례위험 모형을 소정급여 일수 그룹별로 따로 추정하여 제도 변화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콕스 모형은 기준위험(baseline hazard)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다는 점 외에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요인(time-varying factor)를 설명변수로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Kiefer 1988). 추정 결과

[그림 2] 제도 변화 전후 실업 생존률 (unemployment survival rate)



〈표 9〉 '제도 변화 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계수 추정치 (재취업확률 비례위험 모형)

소정급여 일수	전체
90일	0.0275 (0.2041)
120일	-0.0367 (0.2887)
150일	0.8777*** (0.3333)
180일	0.6032 (0.5774)
210일	-0.8448 (0.5774)
240일	-0.8565 (0.5776)

주: 개인 특성, 사업, 직종 및 월, 연도 더미 포함. *** p<0.01, ** p<0.05, * p<0.1

는 <표 9>에 요약, 제시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소정일수 150일 집단을 제외하고는 앞서 그래프에서 살펴본 패턴과 같이 제도 변화 후 재취업률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본 절에서 살펴본 제도 전후의 재취업률과 실업 유지율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 이후에 초기 재취업 탈출이 다소 감소하는 효과가 발견되나 중기 이후 탈출률 증가가 초기 효과를 상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 유지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제도 변화 이전, 초기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크고 재취업수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급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재취업률은 높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취업 인센티브가 매우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제도 변화 이전의 경우, 초기의 재취업수당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커서 현 제도상으로는 실업에 진입하지 않을 일부가 실업에 진입하여 짧은 구직기간을 가지는 진입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3. 제도 변화 전후 재취업수당 수급 및 일자리 유지

가.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 및 재취업 후 일자리 유지 비교

재취업수당 제도의 정책목표인 재취업 성공 여부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표 10〉 제도 변화 전후 재취업자의 수당 수급 및 재이직률

	(단위: %)	
	변화 전	변화 후
재취업 자 중 수당 수급 비율	27.26	21.81
소진일 이내 재취업자(구기준) 중 수당 수급	68.67	45.14
잔여 수급일 30일 이상 재취업자(신기준) 중 수당 수급	76.56	55.31
재취업자의 이직률		
9개월 내 이직	48.31	47.24
12개월 내 이직	56.71	56.50
관측 수	1,975,872	1,063,930

제도 변화 전후 조기에 재취업한 구직자 중 실제로 재취업수당을 수급한 비율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표 10>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전후 재취업자의 수당 수급자격 자의 수급율, 그리고 재이직률을 살펴본다.

제도 변화 전 구직급여를 받은 재취업자 중에서 재취업수당 자격을 만족하는, 즉 구직급여 소진일 이내에 재취업한 자³⁾의 재취업수당 수급 비율은 68.7%이었으나, 제도 변경 이후로는 45.1%로 약 34%가량 감소하였다. 그러나 제도 변화 후 조기재취업 수급률의 감소는 순전히 수급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제도 변화 후 자격기준인 잔여 수급일 30일 이상인 재취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도 변경 전 후 재취업수당 수급률을 비교해 보았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여도 제도 변경 후 76.6%에서 55.3%로 감소하여, 소진 기준으로 했을 때와 감소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같은 조건 하에서도 제도 변화 이후 수급률이 줄었다는 것은 우선 비용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재취업자의 조기수당 수급률이 제도 변화 후에 감소하였다면, 이제 재취업자의 이직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 일자리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제도 변화 전에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하다고 인

3) 완벽한 자격조건을 위해서는 6개월 계속고용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나, 청구가능 시점이 재취업 시점이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를 부분자격조건(partial qualifi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정) 수급조건이 있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재취업수당 제도의 정책 목표 중 하나 이므로 9개월 내 및 12개월 내 이직률을 비교하였다. 9개월, 12개월 이직률 모두 제도 변화 이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나 소폭 감소하였다(9개월 이직률은 48.3%에서 47.2%, 12개월 이직률은 56.7%에서 56.5%로 변화). 조기수당 자격자 중 수당 수급은 감소한 반면, 재취업자의 장기 근속률에는 감소가 없고 오히려 소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재취업자의 조기수당 취득 및 재이직 확률 회귀모형 추정

앞서 살펴본 수당수급 및 재이직률은 인적사항 및 일자리 특성 등을 통제하지 않고 비교한 것이다. 이들을 통제하고 재취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취득에 관한 선형확률모형을 추정하여 <표 11> 제시하였다. 제도 변화 더미변수와 재취업수당 자격 더미변수의 교차항이 관심 변수인데, 제도 변화 전 수급자격 기준을 이용한 첫 번째 모형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을 통제했을 때, 재취업한 조기수당 수급자격자의 수당 수급확률이 22.6%포인트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기준인 소진일 30일 이전 재취업 기준을 사용한 두 번째 모형 추정 결과로는 수급자격자의 수당 확률이 제도 변경 전에 비해 17%포인트 가량 하락하였다. 통제변수를 추가하여도 조기 재취업자의 수급확률이 제도 변화 전에 비해 상당히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조기재취업수당 취득확률모형

변수	(1)	(2)
제도 변화 후	0.0039*** (0.0005)	-0.0068*** (0.0004)
재취업 수당 자격자(구기준)	0.6372*** (0.0006)	
제도변화 후 * 재취업 수당 자격자(구기준)	-0.2266*** (0.0009)	
재취업 수당 자격자(신기준)		0.6854*** (0.0006)
제도변화 후 * 재취업 수당 자격자(신기준)		-0.1700*** (0.0010)
관측 수	3,039,802	3,039,802
R-squared	0.4792	0.5332

주: 개인 특성, 사업, 직종 및 월, 연도 더미 포함.
 *** p<0.01, ** p<0.05, * p<0.1

개인 특성을 통제한 재취업자의 이직에 관한 선형확률모형(9개월 내 재이직)의 추정치는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⁴⁾ 재이직확률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는 달리 인적 변수 통제 후에는 제도 변화 후 재이직률이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0.5%포인트 증가). 그렇지만 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자의 이직률은 제도 변화 후 낮아졌다. <표 12>의 모형 (5), (6)에 따르면 제도 변경 후에 구기준(구직급여 미소진) 수급자격자의 이직률은 4.5%포인트, 신기준(소진 30일 이전 재취업) 수급자격자의 이직률은 5.3%포인트나 감소하였다. 평균 재이직률이 47-48%임을 감안 할 때 10% 내외의 감소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형 (7)에 따르면, 실제로 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재취업자의 9개월 이직률은 제도 변경 전에 비해 무려 21.5%포인트나 감소하여 정책 수혜자의 새 일 자리 유지율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9개월 내 재이직 확률모형

변수	(1)	(2)	(3)	(4)	(5)	(6)	(7)
제도 변화 후	0.0050*** (0.0010)	0.0243*** (0.0010)	0.0222*** (0.0010)	0.0303*** (0.0010)	0.0388*** (0.0011)	0.0360*** (0.0011)	0.0694*** (0.0010)
재취업 수당 자격자(구기준)		-0.0377*** (0.0006)			-0.0194*** (0.0008)		
재취업 수당 자격자(신기준)			-0.0404*** (0.0007)			-0.0191*** (0.0008)	
재취업 수당 수급				-0.1204*** (0.0007)			-0.0492*** (0.0009)
제도변화 후 * 재취업수당 자격자(구기준)					-0.0452*** (0.0012)		
제도변화 후 * 재취업수당 자격자(신기준)						-0.0527*** (0.0013)	
제도변화 후 * 재취업 수당수급							-0.2146*** (0.0013)
관측 수	3,039,802	3,039,802	3,039,802	3,039,802	3,039,802	3,039,802	3,039,802
R-squared	0.0406	0.0418	0.0419	0.0499	0.0422	0.0424	0.0571

주: 개인 특성, 사업, 직종 및 월, 연도 더미 포함.

*** p<0.01, ** p<0.05, * p<0.1

4) 12개월 내 재이직 확률모형의 결과도 정성적으로 거의 동일하여 본문에는 생략하였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제도 변화 전후의 조기재취업자 수급자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기재취업수당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단축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취업자의 수당 수급확률 및 재취업 후 장기근속 유도 여부를 중심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에 대한 특성 분석 결과, 전체 구직 급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 고학력, 30대 이하의 젊은 실업자들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취득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도 변화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유사하다. 그러나 구직급여자의 재취업수당 수급확률 회귀분석 결과, 2010년 이후로 여성 및 고령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고 중졸 이하 저학력층의 수급확률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제도 변경 후에 수혜 대상 그룹이 취업애로계층으로 다소 전환되어 정책 목표에 보다 근접해졌음을 시사한다.

제도 변경 전 후의 재취업률과 실업 유지율 분석 비교 결과를 요약하면, 재취업수당 제도 변화 이후에 초기 재취업률이 다소 감소하는 효과가 발견되나 중기 이후의 재취업률 증가가 초기 효과를 상쇄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실업상태 유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 변경 후 수급요건 강화로 인한 구직자의 재취업 유인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자의 조기수당 취득률은 2010년 제도 변화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제도 변화 후의 취득률의 감소는 제도 변화 전 자격기준을 충족한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변화 후 자격기준 조건을 만족한 집단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9개월 혹은 12개월 장기 근속률은 소폭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지만, 급여 소진일 이전 재취업자 및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근속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급요건이 강화된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종전의 관대한 제도에 비해 현행 제도는 수급자 감소 등 비용지출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한 재취업 유인의 감

소는 크지 않은 반면, 재취업한 일자리 유지율은 상승하는 추가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책 효율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0년 제도 변화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고용 유지기간 요건의 강화, 잔여급여일수 및 지급기간의 단순화, 수급자격 기간의 축소 등은 정책 효율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기실업자 혹은 장기 취업애로계층의 재취업 유도가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정책 목표라고 생각할 때, 향후 제도 개선은 이러한 정책 목표에 부합한 취업촉진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노동시장 활성화와 고용안정, 고용률 증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재취업수당의 지급 구조를 수급자격 일정기간 동안 정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수당 지급 구조는 자격 초기에만 재취업 인센티브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재취업수당 수급 자격 기간 중이라도 초기 이후에는 재취업 장려 효과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또한 혹시 있을지 모를 재취업수당 수급을 위한 실업 진입효과 억제 측면에서도 초기 일정기간 동안 정액 지급을 유지하는 구조는 바람직한 지급 구조가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구직급여에서 긴 소정급여일수를 적용받는 집단에 대해서만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구직급여 대상자 중 큰 비중이 이미 짧은 소정급여일수를 적용 받는 현실에서 이들 집단에 추가적으로 구직기간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연 잠재적인 장기실업자의 취업 유도라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정책 목표와 부합할 수 있는지는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을 축소하는 데에서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현재 짧은 소정급여일수를 적용 받는 대상의 수급기간을 현실화하거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에 지출하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현 · 박혁.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부: 심층평가(실업급여)』. 노동부, 2008.
- 김동현 · 박혁.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율과 참여자 특성의 변화」. 『노동정책연구』 12권 4호 (2012. 12): 25-44.
- 김용성 · 유한욱 · 강지령 · 이상돈 · 이명재 · 김동현.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조기재취업수당 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09.
- 이시균. 「구직급여 상하한선 효과분석과 소득대체율,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 분석」. 『고용보험평가센터 지정·운영 2차년도 최종보고서: 실업급여사업부문』. 고용노동부, 2012.
- Ai, C. and Norton, E. “Interaction Terms in Logit and Probit Models.” *Economics Letters* 80 (1) (July 2003), 123-129.
- Decker, P. “The Impact of Reemployment Bonuses on Insured Unemployment in the New Jersey and Illinois Reemployment Bonus Experimen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 (3) (Summer 1994), 718-741.
- Kiefer, Nicholas. “Economic Duration Data and Hazard Function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6 (2) (June 1988), 646-679.
- Meyer, Bruce D. “Lessons from the US Unemployment Insurance Experimen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1) (March 1995), 91-131.
- _____. “What Have We Learned from the Illinois Reemployment Bonus Experiment?” *Journal of Labor Economic* 14 (1) (January 1996), 26-51.
- Robins, P. and Spiegelman, R. “Reemployment Bonuse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Evidence from Three Field Experiments.” WE Upjohn Institute, 2001.
- Wooldridge, J. M.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The MIT Press, 2001.

abstract

**The Effectiveness of the Early Reemployment Bonus:
the Role of the Policy Change in 2010**

Taehyun Ahn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early reemployment bonus system in Korea and investigates its effects on job finding rates of the unemployed and on their reemployment outcomes.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s reveals that, after the policy change, the probability of receiving the bonus increases among female, older, and less educated job seekers. This paper also shows that exit hazard from unemploymen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while the stability of the subsequent jobs has been substantially improved.

Keywords: early reemployment bonus, employm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s